

1	2	3
98 2/26	B1	9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제3차 토론회

다큐멘타리 <레드 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

때 : 1997년 12월 4일(목) 15시

곳 : 가톨릭회관(명동) 3층 대강당

주최 :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녹색교통운동, 독립영화협의회, 문화정책연대 기획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제2회 인권영화제-서울 조직위원회, 제주 4·3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2001,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국제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사)민족문화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순서없음)

주관 : 씨네 21, 문화정책연대 기획단

◇ 취지

1948년에 있었던 제주 4·3의 진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두 편에 대한 이적표현물 시비가 있었고, 그 상영을 이유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가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언론·출판·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은 무엇인가? 다양한 사상·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환이 가능해야 민주정치 체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영화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마땅히 발언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다큐멘터리 두 편에 대한 비판은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니 문제"라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대한 반박 또한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폭넓은 문제의식을 갖고 겸연 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 형식 및 일정

- 1) 주최 :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 2) 주관 : 씨네 21, 문화정책연대 기획단
- 3) 일시 : 12월 4일(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4)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구 성모병원) 3층 대강당

◇ 토론회 순서

- 1) 인사말씀 : 공대위 대표자
- 2) 토론 사회 : 김창남(성공회대 교수/언론학)
- 3) 발제 및 토론
 - * <레드 헌트> 축약 상영 (10분)
 - 가) 제주 4·3사건을 통해서 본 현대사 인식
 - 발제 : 양한권(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사무차장)
 - 토론 : 양정심(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 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시론
 - 발제 : 장호순(순천향대 교수/언론학)
 - 토론 : 조성봉(<레드 헌트> 연출가), 김혜준(인권영화제 집행위원)
 - 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발제 : 김순태(방송대 교수/법학)
 - 토론 : 조광희(변호사)

한국 현대사에서의 '4. 3'

양한권(제주 4. 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나는 10여 년 전 “제주도 4.3 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학위 논문을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 사회과학이 흔히 거론하는 ‘가치 배제(가치 중립)’의 개념으로 ‘폭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의 선택은 원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인간 생활의 객관적 실재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에서 ‘가치 배제’라는 허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폭동’이라는 용어는 - 나의 ‘가치 배제’라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 ‘4.3’의 범위와 그 주체를 1948년 4월 3일, 무장 유격대가 공격을 개시한 다음 그 후 집중적으로 학살이 자행된 약 1년 간으로 축소하고, 또한 이것을 ‘극좌 세력’의 무모한 도발에 의해 자행된 반란, 폭동으로 성격지울 위험성을 내포함으로써 당시 제주 도민(민중)의 투쟁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4.3’은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미국의 한반도 점령 직후부터 개시된 ‘반미 자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여기서 제주도민은 해방 직후의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한 투쟁이 1947년 3월 1일 이후 미군정의 본격적인 탄압에 직면하게 되자, 이후 계속된 제주도 내에서의 미군정과의 투쟁을 최종적으로는 5.10 단독선거의 거부라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한, 이 ‘항쟁’에서 가장 중요한 뜻을 담당한 주체로 그 역사적 위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2. 1948년 4월 3일의 무장 봉기를 전후한 제주도민의 투쟁

1948년 4월 3일의 무장 유격대의 공격은 ‘극좌 세력’의 무모한 도발에 의해 자행된 반란, 폭동인가? 이 ‘극좌 세력’의 ‘폭동’은 제주도민과 아무런 연계도 없이, 단지 도민을 이용하고, 사주한, 그리하여 결국 대살륙을 낳은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8.15 직후 제주도민의 현실 인식과 정치적 실천이 미국의 점령에 의해 어떻게 억압되고 굴절되어가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증언을 보자.

“용강리 사람들은 일제의 항복으로 조국이 해방된 게 아니라고 여겼기에, 힘을 모아 독립운동을 전개해야만 나라를 찾아 잘 살 수 있다는 일념에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 있었다.”

“구좌읍 종달리와 또 다른 마을에서는 일경으로 있던 이들이 해방된 후에도 여전히 그 직책을 가지고 행세를 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듬매를 썼다. 일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반발이었다.”

“선흘리는 동백나무 숲을 바로 옆에 둔 마을이었다. 그 동백 숲은 마을 사람 모두의 것이었다. …… 그랬는데 어느 날, 마을 부자 한 사람이 주재소에 허가를 받기를 자기만 ‘선흘곳’ 동백을 벌채할 수 있게

했다면서 입산통제를 해버렸다. …… 마을 사람들은 해방이 되자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 그 와중에 경찰은 부자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건의를 불손하다고 몰아 붙였다. 젊은이들이 모여 어느 날 그 부자를 마을에서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위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제주도민은 8.15를 자신들이 정치적 실천을 통해 온전한 해방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인식,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미국이 한반도의 남쪽을 점령했다. 점령 즉시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의 자원, 토지, 산업 시설을 몰수하고 자의적 불하를 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을 가혹하게 처벌했다. 그 점령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트루먼의 특사였던 E.W. 포래는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한반도는 …… 우리가 아시아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전면적인 승리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전략적 기지이다. …… 일본인들은 철도를 비롯한 모든 공공 사업과 천연 자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들을 인민위원회가 소유하려 한다면 꾀도 한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말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에 자본주의적 정부 형태가 담보될 때까지 미국이 한국 내의 일본인 재산에 대한 권리와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상의 고백은 미국이 변혁을 바라는 한국인을 제거하고 일본인과 민족 반역자들이 민중에게 강탈한 재산을 미끼로 하여 친일 세력을 친미 세력으로 전환시킨 후, 이를 통해 한국을 지배한다는 정치적 목표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그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지배 야욕과 이와 결부된 미군정의 반민중적 정책에 대한 남한 민중의 투쟁은 ‘10월 민중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한 미군정에게 있어 이제 남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1947년 9월 1일 이후의 제주도에서의 사태 전개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 5.10 단독 선거가 결정되었다. 이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의 증언을 보자.

“난 사상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서 좀 모자라지만, 내 자신이 산에 올라가게 된 것도, 왜정 치하에서 삼십 몇 년간 우리가 애써 지은 농사를 다 뺏기고, 우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느냐 이거였어. 왜 우리가 미군정의 지배를 받느냐고. 그리고 그 때 왜정시대에 왜놈과 불어 먹던 사람들이 다시 미군정 쪽에 불어 먹으니 이것이 잘못된 거라.”

이 입산자의 “사상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서 좀 모자라”라는 고백은 겸손인가? 혹은 ‘극좌 세력’의 위선에 찬 거짓말인가? 나는 당시 단독 선거를 거부한 제주 도민들이 생각이 바로 이러했다고 보아야 정당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민들의 적극적이고 평화적인 선거 거부에 의해 미국의 남한에 대한 정치적 목표는 일순간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미군정과 미국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있던 당시 한국 정부의 가혹한 피의 보복은 ‘제주 도민이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는 침소봉대 및 거짓 선전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었다.

3. 맷으면서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4.3’은 1948년 4월 3일의 무장 봉기를 지칭하는 개념일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할 것이다. 오히려 4월 3일은 8.15 이후 자주적 독립된 통일국가를 수립하려 투쟁하고, 5.10 단독 선거를 거부함으로써 그 투쟁을 마무리한 ‘4.3 민중항쟁’의 한 과정, 계기로 위치지워져야 할 것이다.

‘4.3’은 이렇게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역사적 패배주의’가 극복될 실마리가 주어질 수 있다. 당시 도민들이 “이념에 무관심”했고, “그런 말 뜻조차 몰랐다” 따라서 그들은 무고하게, 어울하게 죽어 갔다는 주장은 ‘역사적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며, 혹은 양비론으로 시각을 호도할 위험마저 있는 것이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 생각인 것이며 따라서 어떤 인간도 이념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의 도민들의 증언은 그들이 지극히 이념적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이념이라는 철학적으로 세련화된 개념으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당시 도민들의 이러한 ‘이념’은 반공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또한 ‘분단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포기하고, 회피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도민은 ‘역사적 패배주의’에 젖어 들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일의 시대에는 반드시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분단 시대’의 논리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시론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1.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지난주 일요일 KBS 명화극장은 할리우드 서부극의 고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하이눈>을 방영했다. 52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하이눈>은 그해 아카데미 상 4개부문을 수상했고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품이었다. 게리 쿠퍼가 분한 정의의 보안관 케인이 4명의 악당과 결투를 벌여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조 일보에 실린 영화평은 프레드 진네만 감독의 영화기법에 초점을 맞추어 '고전중의 고전'으로 극찬하고 있다.

<하이눈>은 영화속 시간과 실제 펄름 러닝 타임을 맞춘 리얼 타임 기법으로 긴장을 극대화한 새로운 스텀이었다. 보안관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며 마을 사람들도 역사를 만드는 서부개척 인공들이 아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를 존 포드, 존 웨인 콤비의 웨스턴과 비교해 첫 어른용 웨스턴 (adult Western)이라 불렀다. 프레드 진네만 감독은 단 한 프레임도 낭비하지 않았으며 액션, 배경음악, 맨스 등 영화를 떠받치는 소품들이 주인공 심리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¹⁾ <하이눈>이 1950년대 후반부터 양산되기 시작한 서부영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영화표현상의 기법 문만이 아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상투적 서부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긴장성이 영화속에 배어 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보안관과 무자비한 악당의 대결구도는 존웨인의 서부영화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마카로니 웨스턴에 의해 거듭 복사되었다. 그러나 <하이눈>을 지탱하는 기줄거리는 정의의 보안관과 악당과의 대결 구도가 아니다.

<하이눈>은 보안관 케인과 마을주민들간의 긴장관계를 주된 갈등으로 다루고 있다. <하이눈>은 악당과 투를 자청한 보안관을 돋기보다는, 그를 몰아내고 악당들의 비위를 맞춰 평화를 구걸하려는 마을사람들 모습을 통해 1940년대 후반부터 미국사회에 몰아닥친 매카시즘의 희오리 속에서 양심과 정의를 외면한 다수 미국인들에 대한 통렬한 풍자였다. 서부극이라는 형식을 빌려 매카시즘에 굴복한 비굴한 미국인들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다. <하이눈>이 매카시즘을 비판한 영화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선일보가 이 영화를 극찬한 것일까?

미국에서 매카시즘 선풍이 가장 먼저 불어닥친 곳은 할리우드였다. 1930년대와 40년대 초반의 할리우드 미국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체제를 비판하는 <스미스씨 위싱턴에 가다>, <분노의 포도> 등 사회성 질 작품을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전쟁 중 선전영화에 열중했던 할리우드의 진보적 영화인들은 다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소간의 관계가 동맹국에서 적대관계로 급격히 냉각되면서 보수우익 정치인들은 좌익세력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진보진영 탄압에 들어갔다. 명분은 공산당원 색출이었지만 당시 미국 공산당은 정치세력으로서 수명을 다한 상태였다.²⁾

그들은 여론의 각광을 받기 쉬운 할리우드를 첫번째 공격목표로 잡았다. 1947년 소위 "할리우드 10"이

조선일보, 97년 11월 30일자.

참조, Joseph R. Starobin, American Communism in Crisis, 1943-1957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라는 진보적 영화인들이 반미행동위원회 청문회에 소환되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연방의회 청문회가 자신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들은 의회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할리우드 영화제작자들은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실상 영화계에서 추방시켰다. 당시 최고 인기배우인 로버트 테일러와 게리 쿠퍼, 그리고 배우 조합장인 로널드 레이건 등은 연방의회의 청문회에 적극 협조하면서 공산주의 색출에 동조했으나 대다수의 영화인들은 연방의회반미행동위원회의 청문회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문회에 소환된 영화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의원들과 정면대결을 벌였을 때 할리우드 영화계는 그들을 옹호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³⁾

할리우드의 굴복은 보수 우익세력을 기고만장, 사기충천토록 했고, 매카시즘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계기가 되었다.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종교계,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으로 공산주의자 색출작업은 미국 전역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 색출을 빌미로 한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이었다. 당시 극소수 극열분자로 구성된 미국 공산당은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철저히 배척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 우익 세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부쳤다.⁴⁾

반공이데올로기의 공포속에서 1950년대 미국은 민주주의도 정의도 양심도 찾아보기 힘든 "공포의 제국"으로 변해버렸고 <하이눈>은 미국을 공포의 땅으로 만든 비굴한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자화상이었다. 물론 1951년 개봉 당시 영화 속에 담겨진 알레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하이눈>은 보안관 케인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함께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마을을 떠나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과거 그가 체포했던 악당 프랭크 밀러가 (부패한 정치인에 의해) 사면되어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악당 일당은 물론 조 매카시 상원의원과 같은 무모한 반공주의자들의 알레고리이다. 한편 케인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무기로 미국사회를 휩쓰는 보수우익에 대항하는 미국의 진보적, 양심적 영화인을 상징한다. 마을 사람들은 밀러가 케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임을 직감하고 보안관 케인에게 속히 떠날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보안관 케인은 마을사람들과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을에 남아 그와 대결하기로 마음먹는다. 악당일당이 두려운 상대이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인은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기 위해 설득하지만 그와 함께 싸우겠다고 나선 친구는 단 1명 뿐이다. 마을의 치안관사마저 밀러일당은 "잔인하고 광폭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난다. 법치주의를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법도 매카시즘에 대처하기엔 무능력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매카시즘 선풍이 불어닥치자 미국의 사법부 조차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참히 짓밟히는 양심,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를 모른 척 눈을 감았다.⁵⁾

케인을 도와야 할 보안관 조수조차 여자문제로 케인을 시기하고 있을 뿐, 밀러의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다. 사회적 이슈를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할리우드 영화인들에 대한 알레고리인 것이다. 케인이 한 때 사랑했던 여자조차 서둘러 마을을 떠나고 폭력을 거부하는 퀘이커 교도인 아내도 마을을 떠나려는 기

3 참조, Victor S. Navasky, Naming Names (New York: Penguin Books, 1980).

4 참조, David Caute, The Great Fear: The Anti-Communist Purge Under Truman and Eisenhow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8).

5 참조, Jerold S. Auerbach, Unequal Justice: Lawyers and Social Change in Moder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차에 몸을 실는다. 한편 마을주민은 오히려 케인 때문에 마을 경기가 나빠졌다며 밀러를 은근히 반기기까지 한다. 케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가지만 목사와 신도 모두 의견만 무성할 뿐 정작 행동을 하자고 했을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케인에게 마을을 떠나도록 거듭 권유한다. 밀러의 복수는 마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 아니라 케인과 밀러간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싸움이라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이다.

<하이눈>에서 매카시즘을 상징하는 악당 밀러 일당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매카시즘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 바로 그것이었다. 보안관 케인처럼 매카시즘과 정면 대결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법의 집행자인 치안관사도, 도덕적 지주인 교회 목사도 모두 악당들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했을 뿐이다. 매카시즘에 정면대응하지 못한 미국의 법조계, 종교계, 지식인 계층을 풍자한 것이다. 케인이 마을 주민의 도움을 얻는데 실패하자 유일하게 그를 돋겼다고 나섰던 친구조차 케인을 떠난다. <하이눈>에 등장하는 마을주민들의 모습은 정치적 병폐인 매카시즘에 대항하기 보다는 외연과 도피로 일관한 미국인들의 모습이다.

결국 케인은 혼자 악당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된다. 여기에는 마지막 순간 마음을 돌려 남편에게 돌아온 아내의 도움이 컸다. 결국 케인의 승리로 끝나지만 영화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결투가 끝나고 케인은 보안관 뱃지를 땅에 펴개치고 아내와 함께 씁쓸한 분노를 삭이며 마을을 떠난다. 법과 질서, 그리고 미국사회의 인권의식에 대한 배반감의 표현이다. 그러나 영화와 역사적 현실은 일치하지 않았다.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정면대항한 할리우드의 영화인들은 보안관 케인처럼 대결에서 승리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할리우드 영화제작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계로 부터 추방당했다.

<하이눈>은 서부극의 형식을 빌어 194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적색공포와 매카시즘의 와중에서 양심과 정의를 위해 나선 소수의 미국인들의 인권보호정신을 기리고, 매카시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대다수 미국인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인 것이다. 영화 <하이눈>은 악의 근원은 악당 자체라기 보다는 악에 대항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비굴한 마을 주민들에 있음을 보여준다. 매카시즘의 병폐도 매카시즘을 선동한 소수의 정치인들 보다는 그것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한 미국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표현의 자유와 권력구조

<하이눈>에 묘사된 미국 서부의 작은 마을은 1950년대의 미국사회의 축소판인 동시에 1990년대의 한국사회 단면이기도 하다. 그것은 인권이라는 것이 국경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가치인 것처럼, 인권탄압이라는 것도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인권탄압이란 것은 인간사회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져야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배권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영역은 표현의 자유이다(이글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근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형태를 갖추면서 표현의 자유를 모든 자유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기본권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다른 자유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으로 부당한 지배권력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언론매체를 독점하는 것이 권력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가 된다. 표현의 자유가 주어질 경우 지배세력의 부당성, 문제점등이 드러나 자신들의 허약한 지

지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성이 약한 정권일수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근대사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과 언론의 통제로 점철되어 있다. 해방과 더불어 미 군정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진보언론을 탄압했고, 이승만 정권하에서 번성한 소위 야당지도 보수 우익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비판에 한정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또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정치적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렸고, 이후 들어선 군사정권도 방송매체의 국유화, 신문시장의 독과점, 영화검열 등을 통해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독점을 시도했고 국가보안법을 강화해 체제비판을 차단하려 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군사정권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⁶⁾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도 군사정권체제하에 굳어진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이용하여 들었을 뿐이었다.

권력유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는 정권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정권을 설득하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국민들의 합법적인 지지를 받는 안정적인 민주정권으로부터 기대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적 정권이라 해서 표현의 자유를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권을 비판하고 도전하는 세력의 표현에 대해 좀 더 관용을 베풀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결국 세대결일 수밖에 없다. 즉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세력의 힘을 강화시켜 정권이 감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수호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를 늘여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세력들의 목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권과의 정면대결보다는 지지세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하이눈>의 보안관 케인도 마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으면 목숨을 건 위험한 결투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세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란 인간으로서 자기발전을 위해 누구나 누려야할 가장 중요한 권리이고, 진리추구를 통한 인류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임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빈번히 침해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이해시키고,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개인적인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정권의 부패와 부도덕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될수록, 국민들에게 드러내 놓을 수없는 떳떳치 못한 구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독재정권은 한결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적극 통제하고 이용해왔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이후 행해진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언론으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케 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가장 큰 수혜자인 우리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려하고 옹호해 왔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권을 감시, 견제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오도해 온 것이다. 권력뿐만 아니라 언론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극복할 대상이 된 것이다.⁷⁾

6) 참조, 김민남 외, 새로쓰는 한국언론사 (아침: 1993).

7) 참조, 김영선, 한국의 정치권력과 언론정책 (전예원, 1995).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극렬히 억압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말한마디, 문장 한단락 꼬투리를 잡아 무고한 시민을 수년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경고메세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자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보여줌으로써 함부로 덤벼들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은 <하이눈>의 마을주민들처럼 불안하고 용기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실효를 거두게 된다. 매카시즘 선풍이후 미국사회를 비판하는 영화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섹스와 폭력으로 점철된 상업영화가 판을 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얼마전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구속수사 이후 정부와 여당 비난하는 통신내용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⁸⁾

정권은 또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통해서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호도하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국가의 안보와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순한 세력들을 단호히 처단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 도덕성을 강화시키려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풍양속을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았던가? 그러나 가장 부패하고, 부도적하고, 국가의 기틀을 흔들리게 한 장본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자들, 바로 그들이었다.

3.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작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다양한 형태로 뛰어 왔다. 논문, 소설, 만화, 영화,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와 표현행위가 제재를 받아왔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근원을 갖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불안정한 권력이다. 표현의 형태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억압의 주체와 궁극적인 목표는 다르지 않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침해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통의 적에 대항하기 위한 상시연합체제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처지는 <하이눈>의 보안관 케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빈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당사자 외에는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반독재 투쟁을 벌이던 시절, 인권운동은 양심세력으로 국민의 도덕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가고 지배 권력의 억압이 보다 은밀하고 교묘해지면서 인권운동은 초점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했다. 김영삼 정권하에서 시민운동이 활발해 졌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시민운동의 현실이다. 반면 권력과 언론은 군사독재정권과 더불어 인권탄압은 사라졌다는 그릇된 환상을 거듭 재생산해 내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이 희박해진 궁극적인 책임은 인권운동 진영에 있다. 정권과의 정면대결에서도 실패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인권탄압의 실상과 인권탄압의 폐해를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얼마전 한국 인권운동의 대표적 상징 중의 하나인 <인권하루소식>이 지령 1000호를 맞았다. 그러나 그 발행인은 감옥에 있어야 했다는 사실은 현정권의 인권보호 의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김영삼 정권하에서의 인권운동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의 억압은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따라서 국민적 지지가 허약한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계속 억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정권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가 될 뿐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성있는, 국민 다수의 지지기반을 갖춘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불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이데올로기를 투영하거나 가치판단이 전제되어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란 우익이던 좌익이던 중도든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인권운동은 진보적 운동권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래서 진보적 이슈를 중심으로한 인권운동이 주류를 이루어 왔고, 대다수 보수 중산층들로부터 외면되어 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진보적 개혁세력의 전유물도 아닐 뿐더러 진보적 개혁세력의 지지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는 없다.

김영삼 정권들이 표현의 자유에 관해 다른 분야보다 개선이 이루어진 분야가 음반분야이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일반대중을 지지세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정태춘, 서태지 등의 대중가수들이었다. 결국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는 길은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대중들의 숫자를 늘리는 길 밖에 없다. 인권운동의 초점도 여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보수중산층들을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동원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없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보수 중산층을 표현의 자유 옹호 세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 가져오는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부각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당위성 설명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 때문에 통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고 있는지 깨우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 예로 미국은 매카시즘의 후유증으로 인해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매카시즘이 미국사회에 원동력인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했다. 시장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많은 사회개혁 대안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노선과 방향이 같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고 개혁세력은 반론 대신 침묵을 택했다. 그 결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이나, 국가보장 의료보험제도가 사회주의 제도라는 이유로 외면당하였다. 월남전 참전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토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매카시즘의 후유증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 굽어터지기 시작하였다. 청년층의 월남전 참전 반대로 인해 미국사회는 크게 분열되었다. 월남전 수행에 따른 국방비의 증가로 인해 빈부격차해소, 인종차별철폐, 범죄소탕, 마약퇴치 문제등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아직도 미국사회에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인종차별문제, 범죄문제, 마약문제등이 초기에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1950년대의 매카시즘이다.⁹⁾

인권의 억압과 진실의 왜곡으로 얼룩진 우리의 현대사에도 매카시즘의 폐해를 보여주는 예는 무수히 많다. 1970년대 무차별 산업개발에 반대하던 환경보호론자들과 재벌위주의 경제체제의 폐해를 비판하던 사람들에게 군사정권을 재갈을 물렸다. 그 결과 우리의 자연환경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고, 경제도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군사정권하에서 윤리도덕을 이유로 무차별하게 가위질당한 한국영화는 관객 외

8 문화정책연대기획단,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문화예술분야 탄압 사례집”, 1997년 11월, p. 19.

9 참조, Frederick F. Siegel, Troubled Journey: From Pearl Harbor to Ronald Reagan (New York: Hill and Wang, 1984).

면으로 인해 빈사상태에 빠졌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할리우드 영화 수입국중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는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도 보수 중산층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표현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고 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이란 있을 수 없다. 자신들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보고 실험해 볼 수없는 문화적 환경에서 정보화란 그야말로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다. 정보를 장악한 국가만이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정보화 사회를 표방하면서도 현 정권이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행태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¹⁰⁾

한편 국가안보나 사회질서의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 궁극적으로는 권력자의 제발동 죽기라는 사실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보다 겸허하게 비판과 불만의 소리를 수용할 줄 모르던 정권의 말로는 늘 불행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독재자들은 국민들의 준엄한 비판과 원성 속에서 비참한 죄후를 맞아야 했다. 군사독재정권 못지 않게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차단했던 김영삼 정권의 말로도 비극적으로 끝나고 있다. 재벌위주의 경제체제와 노동자 탄압을 비판한 진보적 개혁세력의 목소리를 김영삼 정권이 보다 겸허하게 수용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아집과 독선을 막고, 사회적 불만세력에게 감정적 분출구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적, 사회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함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¹¹⁾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망치는 일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임을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소수의 전위적인 예술인이나 급진적인 개혁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구성원 전체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시키고 국가적 발전과 안정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진정한 애국자는 국가안보를 평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범계층적인 연대와 더불어 미국의 시민권연맹(ACLU)과 같은 상설 인권소송기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ACLU는 1920년대 보수 우익세력이 기승을 부리며 근로자, 흑인 등 기층민중의 인권을 짓밟을 때 진보적 개혁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인권변호단체였다. 이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홍보활동을 벌인 ACLU는 미국인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인권보호 판결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ACLU는 공산주의자, 극우 나치당원, 포르노 제작자들과 같은 사회적 질서의 대상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소송을 대행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¹²⁾

한편 제도권 언론의 인권의식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의 언론은 해방이후 철저하게 보수우익의 논조를 통해서 살아남았고, 군사정권하에서 국민의 인권보다는 정치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성장해왔고 우리사회의 여론창구를 독점해 왔다. 사실상 보수 언론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다수 대중을 설득할 방법이 차단되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언론이 민주적 기능을 회복하

10 참조, 장호순, "정보화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 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권," *한국 사회와 언론*, 1997년, 제 8호, pp. 89-114.

11 참조, Lee C. Bollinger, *The Tolerant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1986).

12 참조, 장호순, "미국시민권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4, pp. 220-37; Samuel Walker, *In Defense of American Liberties: A History of the ACLU*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는 것이 인권의식 확산에 필수적이다. 편집권의 독립과 방송의 공공성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단체들과 인권단체들과의 보다 긴밀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뉴미디어시대에 접어들면서 보수 언론의 여론독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PC통신들을 통해 인권에 관한 메세지를 다수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PC통신의 주된 이용자층인 중산 청년층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 인권운동계는 아직 그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운동의 행태는 이러한 뉴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구시대적 방법인, 토론회, 가두시위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인권의식 확산의 도구로서 뉴미디어의 활용에 인권운동계가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6년 2월 연방의회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상스러운" 내용을 유동시키는 사람들 을 처벌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을 제정했을 때 미국의 인권단체와 정보통신 단체들은 뉴미디어를 이용해 매우 효과적인 인권운동을 벌였다. 정보통신 단체들은 인터넷망을 통한 검은 리본 캠페인을 벌였고 ACLU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각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시민권 연맹뿐만 아니라 애플컴퓨터, 미국도서관협회, America Online, CompuServe, Prodigy,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서적상협회, 미국신문편집인협회, 미국기자협회, 신문편집인협회, 음반협회, Human Rights Watch 등 총 47개 단체와 기업이 이 위헌소송의 원고가 되었다. 결국 올 여름 연방대법원은 통신품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물론 각자의 이해관계가 얹혀있긴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국사회의 저변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¹³⁾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권의식은 본능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뿌리내리는 것이다. 학교에서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당위성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 오히려 학교에서 무수한 인권의 침해를 당해온 세대들에게 인권보호의식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주는 훈련을 받은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4. 맷음말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중 가장 우선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그러한 정권에 대해 인권보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의 보편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신념,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진보적 정치세력이나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권력자에게나 국민들에게나 모두 득이 된다는 사실도 부각시켜야 한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해 권력의 비참한 말로를 촉진시키고, 우리사회를 정치적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는

13 참조, 장호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96년 11월호, pp. 187-202.

보화 시대를 맞을 수도 없고, 산업발전도 불가능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 알려야 한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한 국민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표현의 자유를 압하려는 정권의 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영화 <하이눈>에서처럼 외로운 보안관과 비굴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는 마을, 진정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등장할 것이다. (끝)

「레드헌트」는 과연 이적표현물인가?

김순태(방송대 교수, 법학과)

1. 서두

<레드헌트>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작된 기록영화이다. 4·3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작업은 학자소설가들에 의해서만 아니라 언론사(제민일보 4·3취재반의『4·3은 말한다』1·2·3·4권 참조), 나아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제주도 4·3피해자조사보고서』, 참조) 등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진상을 널리 알리는 데는 별 성과를 거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영화의 전파력은 역시 책이나 보고서보다 강력하다. <레드헌트>는 부산국제영화제(97.10/10~18)에서 상영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 4·3의 진상을 어느 정도나마 알게 되었을 것이다. <레드헌트>는 4·3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당시 억울하게 학살당한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그들과 그 후손들이 여전히 입고 있는 '빨갱이 폭도'라는 누명을 벗겨 그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민중을 이롭게 하였다. 내년은 4·3 50주년을 맞게 되는데, 앞으로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매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 대표를 구속기소하였는데,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주장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적'이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레드헌트」는 우리를 이롭게 한 일은 있어도 결코 적을 이롭게 한 바 없다는 점,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안이 병벙하다.

2. 검경의 주장

공소장을 아직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표현을 살펴 본다.

'4·3사건을 민중에 의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 즉 민중항쟁이며 조국통일투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의한 선전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으로서, 4·3사태를 미제에 대한 민중항쟁으로 설명한 행위의 표현물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1.4.23, 91도212판결, 1992.3.31, 90도2033판결에서 그 이적성을 인정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시된 내용의 비디오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영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한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위 내용 중 4·3사건이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선전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은 극심한 논리의 비약이다. 또한 4·3사태 당시 미군정이 적극 개입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러한 미제에 민중항쟁으로 대항한 것은 바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이었다. <레드헌트>에는 미군정의 강경진압책과 지시·권고, 서북청년단이 이승만의 비호하에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 조병옥이 친일경찰을 등용하였다는 점 등이 구술되고 있고, 4·3은 테러리스트로부터의 자위투쟁이며 통일독립투쟁이라는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4·3에 대한 문외한이더라도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표현물이 대법원판결에서 이적성이 인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그 판례를 잘못 본 소치이다. 위 두 판례 중 91년 4월 23일 판결은 이적성과 무관한 것이므로 92년 3월 31일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3. 이적성판단에 관한 법원의 기준

판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근거조문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가보안법 제7조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3항과 4항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1항중에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따위를 할 목적으로 아니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도 아니므로, 그렇다면 결국 <레드헌트>와 관련해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레드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 제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제7조 5항 등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헌가113결정). 따라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적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여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3.31 90도2033판결; 대법원 1997.6.13 96도2606판결)고 한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의 규제대상인 불법한 표현행위란 국가의 안전 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3.31 90도2033판결)

위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하급심판례 중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 내지 그 통치권자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사상을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초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할지라도 그 방식으로서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폐지·전복하는 것을 선동하는 취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나 있어 이러한 문서등의 표현물을 제작·반포·판매할 경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서울지법 제5형사부, 1995.5.17, 94노3827판결) 고 하여, 『공산당선언』(앞의 판결),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레닌저작선』, 『세계철학사III』, 『조국통일론』(이상, 서울지법 1997. 4. 25, 96고단11142판결) 등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입각할 때 <레드헌트>에 이적성이 있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부연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11월 20일, <레드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도 인천지방법원은 <레드헌트>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법원 내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4. 맷음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수많은 관객이 관람하였고, 서울 등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였지만 그 누구도 <레드헌트>라는 영화에 대하여 이적성 운운한 바 없었다. 현재까지의 법원의 판단도 이적성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직 검찰만이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검찰의 억지주장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빌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억지를 부려가며 구속한 서준식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사죄함이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상황이 극도로 열악하여 민심도 뒤틀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판국에 검찰의 이러한 억지 주장으로 말미암아 공연히 국론이 분열되고 불필요한 노고를 기울이게 한다. 이러한 국력소모행위야말로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쟁점과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

홍석만 (지식인연대 간사, 전자주민카드 공대위 간사)

* 편주 : 이 글은 지난 11월 17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현실화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이름이 낯선 만큼 그 내용에 관심도 적었던 사안이었다고 생각되기에 일반의 관심을 촉구하는 뜻으로 함께 싣는다.

1. 들어가며

지난 95년 4월 정부에서 7개증명 41개 항목을 통합하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인권, 노동, 종교, 사회단체를 막라하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되어 꾸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시행계획 발표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96년 10월에 구성되었지만 지속적인 반대운동의 전개로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반대의 사회적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로 시범실시 지역인 제주도의 제주시의회는 전자주민카드 관련 예산 10억원을 전액 삼각시켰고, 급기야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모체가 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심의가 유보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애초의 7개증명을 담는 계획에서 후퇴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 지문 등 4개 증명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전자주민카드에 삽입되는 '전자첩'의 용량과 전자주민카드의 주전산기의 처리용량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 수록증명을 축소시키기는 하였으나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나머지 증명을 모두 통합시키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전자주민카드의 위협은 이러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2. 프라이버시는 보호될 수 있는가?

전자주민카드가 갖는 최대의 위험성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위험성은 기존의 7개 증명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점과 증명의 통합은 개인정보의 통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는 상식적인 지적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통합은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놓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해 국가소유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한영씨 피격사망 사건으로서 주민등록번호는 교도소 직원이, 주소는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것을 경찰이 심부름센터에 알려주어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에게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던 주민등록정보를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타에 집중시켜 접근이 쉬워지고 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수를 증가시켜 그만큼 더 유출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 보완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법적제재가 약해서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기업간에 개인정보를 매매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돈이나 다름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전자주민카드의 허술한 보안대책

행정전산망의 경우 1달평균 500여건 이상씩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행정망의 경우 각 구청단위로 발생하는 크고작은 전산장에는 하루에도 수천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천4백만명을 대상으로 수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재발급, 경신, 정정, 확인 작업을 매일 수백만건씩 처리해야 하는 주전산기의 업무능력을 의심해 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또한, 해킹에 대비한 망의 안정성도 믿을 수가 없다. 미국방성과 CIA의 컴퓨터까지 해킹당하는 상태에서 수만대의 단말기가 연계되어 1억 9천만건의 자료의 관리가 필요하며 일일 2백만건 이상의 자료변동 및 열람 처리가 필요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과 암호 프로토콜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며칠전 언론기관의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국가기간전산망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인 것이다.

4. 주민등록증제도와 전자주민카드의 문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정부의 주장대로 세계최초의 최첨단 신분증명제도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국민들이 소유하지 못한 소형단말기와같은 전자주민카드를 우리 국민이 소지하고 다닌다고 해서 세계초일류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기술수준이 월등한 선진국의 경우 종이로 만든 신분증명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신분증명서가 그 자체로 통제기능을 갖고 있고,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감시통제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단순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권보호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로 신분증명제도가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신분증명서의 수록내용이 많을수록 그리고 신분증명제도가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될수록 그 나라의 인권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주민등록증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모체가 되는 것이 주민등록증제도이며, 전자주민카드제도의 경우 주민등록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를 '개악'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경우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강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민등록이나 신분증명서 발급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의 처벌도 없다. 오로지 정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몇몇 중남미와 아시아국에서 우리와 같은 강제적인 강제적인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민등록증제도는 정치후진국수준의 신분증명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제공 기능은 없고 오로지 신분증명만을 위해 기능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정한 서비스 제공 없이 신분증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서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즉, 국가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는 서비스제공기능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신분증명이 추가적 기능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그 대신 의료보험증(Medicare Card)과 사회보장증(Social Security Card)으로 신분증명서를 대신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건강카드가 신분증명서를 대신한다.

셋째,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국가에 의한 감시통제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병역관계, 거주지 변경사항, 지문등이 실리지만, 18세가 되어 처음 주민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표상의 수록항목은 무려 141가지나 된다. 실제로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10여가지 개인자료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141가지나 되는 온갖 개인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주민등록상의 141개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안기부와 경찰은 공안전산망을 통해 이보다 더욱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다.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당시 공개된 자료들은 이런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데, 정치인과 재야인사, 교수 및 특정계층시민들의 자료가 공안기관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수집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의 자료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모든 자료는 주민등록을 기초로 하여 수집된다.

넷째,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17세가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매겨져 죽을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모든 피해는 바로 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는 모든 개인의 자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분류되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고유번호(모든 상품에 바코드로 고유번호가 붙어 있듯이)가 부여되어 있고, 이 고유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상호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인간 바코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한다. 몇해 전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을 강요한 적이 있었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다) 많은 재일교포들이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움을 벌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일교포들의 싸움에 지지와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처지를 조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국민이 10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범죄자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받는 지문을 모든 국민이 그것도 10손가락을 다 찍어야 되는 우리의 처지는 정부에 의해서 범죄자로 대접받거나 외국인 대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5. 편리한 제도가 아니다!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면 생활이 편리해 질 것인가?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주민카드의 편리성이다. 확실한 것은 여러장의 증명서 대신에 한 장의 카드를 갖고 다니는 편리함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뿐이다. 전자주민카드가 가져다 주는 이러한 편리함 보다는 증명통합에 따른 불편함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첫째로 무인발급기 설치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제도가 편리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데, 실제 정부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설치할 수도 없다. 예산계획을 살펴보면 무인발급기 설치예산이 나오지 않을뿐 아니라 설령 계획했다 하더라도 유출위험 때문에 설치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줄을 서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전자주민카드를 분실했거나 깜빡잊고 갖고 나오지 않았을 때는 주민등록증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된다. 매년 약 300만건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분실재발급건수가 이와같다면 전자주민카드의 경우 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재발급건수가 있을 것이다. 전자주민카드가 없다면 관공서에 출입할 수 없고 은행업무도 볼 수 없다. 좀 더 먼 미래에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이 전자주민카드에 통합되어 모든 경제활동이 주민카드 하나로 이루어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전산망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불편을 넘어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행정망 고장율이 선진국의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카드자체에 결함이 생겼을 때의 문제이다. 이는 전자주민카드가 없는 상태와 같은 것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의 카드 판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자주민카드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6. 전자주민카드 추진배경에 대한 몇가지 의혹

정부는 편리하지도 않을뿐아니라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려가 높은 전자주민카드제도를 국민들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내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와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해 적극 주창되어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 옛 볼 수 있다. 더욱이 안기부의 경우 전자주민카드추진기획단에 전산망과 전자주민카드의 암호체계에 대한 자문기관 자격으로 참가를 하고 있지만 보안전문가가 아닌 안보전문가인 안기부 대공담당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대국민감시통제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자주민카드추진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작업장의 근태카드나 건물 출입용 신분증명카드의 대용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전자주민카드의 방대한 활용계획을 통해서도 전자주민카드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알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의 사용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경우 개인의 모든 활동의 세세한 내용이 전자화된 형태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러

한 개인기록을 모으는 일은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언제나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자감시사회의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의문의 두 번째 해답은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실시되면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기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하는 정부예산은 총 2,735억이다. 그러나 이 돈은 순수한 정부예산에 불과하다. 반체 칩제조에 총 3,000억원, 카드판독기 제작에 500억원, 카드 인쇄에 1,800억원, 사진제조와 입력에 800억원, 카드 원판제작에 17억원등 총 7000억원의 비용을 정부예산과는 별도로 민간부문에서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카드 자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년에 한번씩 카드를 갱신한다고 하는데, 갱신비용으로 3년마다 2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연간 300만 건의 카드의 분실에 따른 재발급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얼마전 모일간지에 전자주민카드사업이 1년 연기됨에 따라 IC카드업체들이 불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사가 났다. 그에 따라 통상산업부까지 끼어들어 정부예산 1천억원을 들여 IC카드 업체의 지원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다시말하면 자본의 시장확보 즉, IC카드 시장의 확장과 보호를 위해 국민 프라이버시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자주민카드는 국가의 개인정보의 요구와 재벌기업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7. 맷는 말

전자주민카드가 국민 프라이버시권을 담보로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인 이해와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것 그 본질인 이상 우리사회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반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제도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 오히려 이 내용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외국단체에 의해 역으로 그 문제점이 한국사회로 재인식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사람들에 의해 공대위가 구성되었다. 공대위의 활동과정에서 정부는 그간의 일방적인 사업태도를 바꿔 여론수렴과 정책개선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왔다. 올해 3월에는 시행계획을 수정하여 98년 4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99년 10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일정을 1년여 정도 연기 시켰고, 전자주민카드에 담는 개인정보도 41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조정하였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몇가지 우려 지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도입의 정당성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넓게 될 사회적 문제는 개인정보유출 증가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신분증명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감시와 통제가 사회구조화된 한국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추진계획을 철회한다고 해

서 더 나아지는 것은 결코 없다. 주민등록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고, 이 정보들은 수시로 유출되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선거 등의 시기에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정보가 임의로 공안기관에 의해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공개되지도 않고 비밀리에 작성되고 있으며, 공안망은 국민들의 통제력을 벗어나 임의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철회를 위한 투쟁이 단순한 제도 개선 투쟁에 머물러서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그 보다는 오히려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의 획득이라는 민중 기본권 수호와 민주주의 사수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전자주민카드 자체의 문제뿐아니라 우리사회 민주화의 새로운 과제들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이나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당연한 듯 사용되어 온 주민등록증의 문제를 최초로 사회문제화 시켜 낼 수 있었으며, 역시 최초로 사회운동의 영역으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풀어 들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사회의 정보화가 던져주는 새로운 과제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는 일이 바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이 갖는 사회적 의의이다.

<주요 경과 사항>

- . 88. 12 한겨레신문, 정부가 통합전자신분증을 추진하려 한다고 보도
- . 95. 4. 주민등록증 개신 기본계획 확정
- . 96. 6.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확정(전자주민카드사업을 정보화촉진증점과제로 선정)
- . 96. 8. 뉴미디어 평론가 김주환씨와 「시사저널」이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최초 제기
- . 96. 8. 맥브라이드 라운드 테이블, 전자주민카드제의 문제점을 최초로 논의
- . 96. 10. 공대위 구성 및 전자주민카드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16개 단체 참여,
- . 96. 11. 공대위 주최 토론회 개최
- . 97. 2.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변경안 발표
- . 97. 3.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 97. 3. 제주도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 설치
- . 97. 4.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 97. 4. 16. 홍보자료집 발간
- . 97. 4. 26. 제주 공대위 주최, 토론회
- . 97. 6. 13. 제주시의회, 지방예산 중 주민등록 경신 사업비 10억원 전액 삭감 의결
- . 97. 7. 14. 국회 내무위,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개최
- . 97. 7. 15.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성명서 발표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 결의 대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

- . 97. 7. 22 국회, 주민등록법 개정안 심의 보류
- . 97. 11.13.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내무위 통과
- . 97. 11.14. 공대위, 국회 내무위 통과 규탄 집회(명동성당)
- . 97. 11.15. 신한국당, 자민련 항의 방문
- . 97. 11.17. 공대위,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결의 대회' (국회앞)
- . 97. 11.17.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97. 11.20.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전개

